

최 신 판 례 예 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인-1691, 2020.04.20

질 의

-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해외자회사에 임가공설비 처분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폐기와 관련된 처분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133, 2020.05.21

질 의

- 신청인은 2016.5월 부친으로부터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이 중 '갑'법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음
- '을'법인은 ◇◇류를 생산하여 전량을 '갑'법인에 납품하고 '갑'법인은 판매·유통시키는 관계임('갑'법인은 판매를 담당하고, '을'법인은 생산

을 담당하는 구조임)

- '을'법인(합병법인)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에 있는 '갑'법인(피합병법인)과 합병을 고려하고 있음
- '갑'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을'법인이 그대로 흡수하여 유지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사업장 이동은 없음
- 합병 이후에도 최대주주는 신청인으로 동일함
-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 18⑥(1)라1)·마1)에 따른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마목1)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관해도 원본 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해야 함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인-1496, 2020.05.26

질 의

- 질의법인은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 ERP시스템과 그룹웨어(회사 소프트웨어)를 연동하여 ERP에서 전표·장부를 작성하고 해당 전표와 증빙을 PDF등의 파일로 변환하여 회사 서버에 5년이상 보관함
- PDF등의 파일로 변환되어 회사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지출증빙의 실물(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명의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제출된 지출증빙 포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령부가-1773, 2020.06.10

질 의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
 -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인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하여 고객에게 주식관련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음(이하 "본건 용역")
- 본건 용역의 주요내용은 주식시장의 각 시간대별 특정 시점에 매수세력이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월 00,000원이며 질의법인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HTS)을 통하여 고객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 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식관련 정보 제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